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9월 1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1일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 서 심의를 생략(안 제7조)

나.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일부 완화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 및 사용허가 표지 부 착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안 제14조)

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대상조정

- 영세민 철거 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이자율 8%에서 5%로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에 한하여 매각 대금을 분납토록 하였으나,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 신설(안 제22조)

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조정

- 농경지 대부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이나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주거용 건물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만 대부료 1000분의 10을 적용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여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를 1000분의10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안 제 23조)

마.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사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미대부 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부료를 20%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요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 대부의 탄력성을 높임.(안 제23조의 2)

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중 제조업인 사업에만 적용하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확대.(안 제23조의 3)

사.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신탁의 종류를 정함.

-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정함.(안 제31조의 2)

아.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범위 확대

-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지금까지는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에 한하여 조성원가로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모든 공장용지로 확대 (안 제39조의 4)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안 제8조, 제14조 5호 및 6호, 제17조, 제19조의 2, 제23조 3항 및 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및 정비사항이며
- 안 제23조 제9항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22조 제2항 제5호, 제23조 제8항, 제23조의 3, 제39조의 4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 안 제31조의 2는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용어의 정비,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붙임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